



회원 종목 단체 규정



당진시체육회

당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정 2022.06.29. 제2차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당진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회원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당진시 ○○○○협회(회 또는 연맹) (이하 ‘종목단체’라 한다.)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당진시 및 충청남도의 위상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 하는 충청남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라 한다.)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당진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종목단체는 그 사무소는 당진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 및 전국대회, 충청남도 및 당진시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지도와 육성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9. 해당 종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 그 밖에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칙

- 제5조(조직)** ①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은 종목단체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로 가입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은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도종목단체 및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종목단체는 도종목단체 및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도종목단체 및 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도종목단체 및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도종목단체 및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도종목단체 및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할 수 있는 권리
 5. 도종목단체 및 체육회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② 종목단체는 도종목단체 및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도종목단체 및 체육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종목단체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 종목단체 및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도종목단체 및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7조(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권리와 의무)** ①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은 종목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종목단체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종목단체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종목단체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종목단체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할 수 있는 권리
 5. 종목단체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②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은 종목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종목단체의 규약,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종목단체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3장 대의원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총회는 제5조에 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등록팀의 경우 교사나 지도자 중 1인, 체육동호인조직의 경우 총무담당자 1인을 추가하여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③ 종목단체가 등록팀, 체육동호인조직이 적어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등록팀의 경우 교사나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경우 총무담당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⑤ 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등록팀의 경우 교사나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경우 총무담당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⑦ 제6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종목단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단체의 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 제10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 ②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제11조(의사 및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조직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4 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전무이사의 임면동의
8. 그밖의 중요사항

-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18조(임원) ①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0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 ② 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회장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로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종목단체의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 · 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21조(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2조(기탁금 반환) ① 도종목단체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기탁금을 회장출연금으로 귀속할 것을 결정하고, 그 조건을 선거공고에 게시하였을 경우 당선인의 기탁금은 도종목단체에 귀속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은 도종목단체에 귀속한다.
3.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도종목단체에 귀속한다.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도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3조(선거의 중립성) ① 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0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

③ 종목단체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및 중앙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도종목단체, 체육회 및 종목단체”(이하 “체육관계단체”라 한다)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관계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종목단체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관계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관계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회장의 사고 또는 권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 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가 재적임원의 3분의 2이상 선임할 수 없다. 단, 소재지 내에 해당분야 인사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예외로 한다.
 2.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8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종목단체 회장은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회장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⑦ 제8조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⑧ 종목단체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3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 제26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종목단체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종목단체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종목단체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③ 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시(군)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종목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종목단체의 임원이 체육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종목단체의 임원이 체육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⑦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구성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9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기간은 포함한다.
-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③ 제29조 제7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 ④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체육관계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 였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5조 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구성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32조(명예직의 위촉) ①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제30조 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각종위원회

제33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현 위원직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을 2개 이내에서 겸임할 수 있다.

제34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종목단체는 각종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관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3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 제35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3조 및 제34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 되는 재산
 - ①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②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재원) 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체육회 및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8조(잉여금의 처리) 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9조(재산의 관리) ① 종목단체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관계단체의 임직원
2. 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1조(회계연도) 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등) ①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종목단체의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도체육회장 및 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종목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도체육회장 및 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등은 ‘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⑨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및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46조(사무국) ① 종목단체는 사무국에는 사무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하되,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는 ○○세로 한다.

3. 임기의 기산 및 보선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사무장은 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⑤ 상근하는 사무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사무장이 비상근직일 경우 예외로 한다.

⑥ 종목단체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7조(사무국의 운영 등) 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8조(해산) ① 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9조(규약변경) ① 종목단체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종목단체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0조(규정 제·개정 등) ① 종목단체는 체육회 종목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 종목규정은 종목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규약을 체육회 종목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의 규약과 체육회 종목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체육회 종목규정,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제한사항)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체육회 종목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대한체육회, 도 체육회 및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3조(경영공시)** ① 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2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구)경기단체 및 (구)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당시 창립총회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구)경기단체와 (구)연합회(이하 '(구)양단체'라 한다.)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양단체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종목단체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목단체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창립총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 창립총회의 대의원은 (구)양단체 협의를 통해 별도로 할 수 있다.

- 제4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양단체의 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양단체의 해산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임원(감사는 제외)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한다. 단, 첫 번째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양단체의 직원은 종목단체 규약 및 제규정에 따른 종목단체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약 시행 당시 종목단체 사무장은 이 규약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종목단체 임원 증임 횟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횟수에는 (구)양단체의 임원의 연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체육회 (구)임원심의위원회에서 연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양단체가 행한 행위는 종목단체 규약에 따른 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제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

의 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구)양단체의 제규정을 따른다.

②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종목 통합 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제규정은 종목단체 규약에 따라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제44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종목 단체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종목단체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종목단체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